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 12. 24(목)
건설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9. 10. 14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9. 10. 14

라. 상정일자 : 2009. 12. 18(제17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건설교통국장 홍준호

○ 검토보고 : 건설교통전문위원 김동호

○ 질의 및 토론

○ **원안가결**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「도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「도로법 시행령」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(안 제2조, 안 제4조제1항)

○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○ 동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와 관련한 조항의 변경에 따른 조례의 정비와 자구수정이므로 이견이 없음.

※ 도로법 개정 2008. 3. 21 / 도로법 시행령 개정 2008. 12. 31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< 질 의 >

○ 이재호 위원

– 도로점용허가 허가부분과 실제 점용되는 부분이 상당이 차이가 있다.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도로점용 허가 후 관리감독이 필요함.

< 답 변 >

○ 건설교통국장 홍준호

-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음.

< 질 의 >

○ 이은석 위원

– 도로법이 3월경 개정되고 그 후 12월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근 1년을 거쳐 조례가 바뀌고 있다.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시에서 되도록 빨리 대처하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시정하기 바람.

< 답 변 >

○ 건설교통국장 홍준호

- 앞으로는 조례개정에 철저를 기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성 : 강문기, 노경수, 박승희, 성용기, 이재호, 이은석 위원

나. 반대 : 없음

6. 수정안 요지

○ 해당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 : 6명)

8. 기타 특이사항

○ 없음

붙임 : 1.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외의 본문 중 “「도로법 시행령」제24조제5항제11호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도로법 시행령」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도로법 시행령」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도로법 시행령」제28조에 따라”로, “「도로법」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도로법」제94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지방세법」제41조 규정에 의한 기타”를 “「지방세법」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”을 “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18조제1항제2호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제2항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도로점용허가 대상) 공작물, 물건, 기타의 시설로서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24조제5항제11호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정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3.(생략)	제2조(도로점용허가 대상) ---------- ---------- 제28조제5항 제9호에 따라---------- ----------. 1.~3.(현행과 같음)
제4조(점용료의 부과·징수) ① 「도로법」 제38조 및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·징수하고,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「도로법」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·징수한다.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「지방세법」 제41조 규정에 의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③(생략)	제4조(점용료의 부과·징수) ①---------- ----------제28조에 따라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제94조에 따라 ----------. ②---------- 제41조 각 호에 해당하는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. ③(현행과 같음)
제5조(점용료의 감면) ①(생략) ②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.	제5조(점용료의 감면) ①(현행과 같음) ②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제1항제2호---------- ----------.
제7조(징수금의 귀속) ①~②(생략) ③시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군·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	제7조(징수금의 귀속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---- 제2항에 따른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